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재난안전법 시행령」의 개정(‘24.7.17. 시행)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었던 공동구 재난관리주관기능이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됨에 따라,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 공동구 재난관리 담당 정원 1명(5급 1명)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99. 99. ~ 99. 99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,018”을 “1,01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08”을 “1,00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979”를 “98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648”을 “1,64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06”을 “1,60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(총경 포함) “1,537”을 “1,536”으로 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18</u>	<u>1,019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008</u>	<u>1,009</u>	+1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979</u>	<u>980</u>	+1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0